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6. 21. 주호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6. 2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4. 7. 24.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7. 22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8. 27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축조심사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주호영의원)

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.

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윤상열)

개정안에 따를 경우,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·모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므로,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참고로 「공무원연금법」상 급여 수급권 압류금지조항을 집행채권이 양육비 채권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, 헌법재판소는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(5명),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(4명)을 제시한 바 있으며,

공무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,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26호, 2025. 8. 14. 개정, 2025. 11. 15. 시행)됨.

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을 압류하더라도, 연금 수급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(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제1항제4호).

다만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 개정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 요지

특이사항 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문정복)

김준혁 의원,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특이사항 없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